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06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임미애 · 김 윤 · 이주희
김남희 · 윤준병 · 조계원
윤후덕 · 김한규 · 이수진
이기현 · 이연희 · 신장식
박지원 · 최혁진 · 손 솔
정진욱 · 송옥주 · 전종덕
윤종오 · 권향엽 의원
(20인)

제안이유

최근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청소년은 아무런 도움 없이 방치될 경우 성인이 되어도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건강 유지 여부는 성장과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전문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정신

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음.

덧붙여 가정·학교 또는 사회의 관심과 보호에서 소외되어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에게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우울·자살충동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4호).
- 나.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조의2제1항).
-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처리·연계 기능을 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의2제1항).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의 원만한 가정·학교·사회 생활 적응

등을 위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연계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21조의3 신설).

사.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업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으로 추가하고, 청소년상담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함”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나. 우울·불안·자해충동·자살충동·중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2조의2제1항 중 “파악하는 등”을 “파악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하며, 위기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으로, “위기청소년에”를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된 보호대상아동이거나 보호대상아동이었던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청소년을 포함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구축·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를 “위기청소년 및 그 가족과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를 “위기청소년 및 그 가족과 보호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족 및 보호자”를 “위기청소년 및 그 가족과 보호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보호지원”을 “보호지원 등”으로 한다.

제6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원만한 가정·학교·사회 생활 적응,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의 제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이 포함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2.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또는 연계
3. 정신건강 위험 유형별 분석·평가 및 맞춤형 사례관리의 실시
4.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예방 및 정신건강 회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장애인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청소년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의료지원”을 “의료지원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 및 결과의 공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각각 제29조제6항 및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함</u>-----.</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위기청소년”이란 <u>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u>을 말한다.</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u>-----.</p> <p style="margin-left: 2em;">가. <u>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u></p> <p style="margin-left: 2em;">나. <u>우울·불안·자해충동·</u></p>
<p><신설></p>	

5.·6. (생략)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자살충동·중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5.·6.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실태조사) ① -----

-----파악하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하며, 위기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된 보호대상아동이거나 보호대상아동이었던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청소년을 포함한다)에-----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 설>

-----.

③ -----

-----위기청소년 및
그 가족과 보호자-----

-----.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등

제21조의2(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원만한 가정·학교·사회 생활 적응,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이 포함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2.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또는 연계

3. 정신건강 위험 유형별 분석·평가 및 맞춤형 사례관리의 실시

4.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예방 및 정신건강 회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⑤ (생략)
<신설>

⑥ (생략)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